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129 발의연월일: 2020. 9. 22.

찬 성 자:김영배·노웅래·박광온

박재호 · 양기대 · 오영환

윤재갑 · 임호선 · 서영교

한병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자유총연맹은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와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단체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조세감면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그러나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는 규정이 2014년 12월 31일 일몰로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재정악화로 활동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임.

이에 한국자유총연맹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함(안 제88조제2항).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유총연맹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88조(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 제88조(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 한 감면) ① (생 략) 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법인이 그 고 ②「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 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 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유총 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 연맹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 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 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 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 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 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14년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1.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 한 법률 | 에 따른 한국자유 제하다. 총연맹 2.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른 대한민국재향군인회